

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정사유

- 가.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및 급변하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 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‘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’에 있는 위원회 설치 운영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조례의 전부 개정이며
- 나. 또한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원만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설치 근거를 조례에 마련코자 함.

2. 관련법령

「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, 제32조, 제37조」

3. 주요골자

- 가. 지구 온난화 방지, 오존층 보호 등 구의 지구환경의 보전 노력
(안 제9조)
- 나. 환경보전기금 설치근거 마련(안 제12조)
- 다. 환경보전 관련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조례제정
(안 제16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의 전부 개정 건은

-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및 급변하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 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‘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조례’에 있는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
-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원만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등 정비·보완 차원에서의 조례 전부 개정으로 생각되므로

위 조례의 전부 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8. 10. 28

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여 기 선

《 관 계 법 령 》

환경정책 기본법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제32조 (법제상의 조치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·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7조 (환경보전자문위원회) ①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시·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·군·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